

광주지방법원 2023. 2. 3 선고 2021가합857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고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규련, 송현규

피고1. C

2. D

3. E

4. 주식회사 F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조연주

변론 종결 2022. 12. 23.

판결 선고 2023. 2. 3.

주 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들과 주식회사 G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을 주식회사 G에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위 각 채권을 주식회사 G에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들의 G에 대한 채권

-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을 상대로 2019. 11. 무렵까지 발생한 미지급 공사대금 472,438,600원 및 2019. 11. 11. 부도 처리된 약속어음금 34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G은 원고 A에 812,438,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19차5895), 이는 2020. 2. 20. 확정되었다.
- 2)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은 G을 상대로 2019. 10. 30. 무렵까지 발생한 미지급 물품대금 277,837,200원 및 2019. 8. 무렵까지 부도 처리된 약속어음금 2억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1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G은 원고 B에 477,837,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19차5716), 이는 2019. 12. 13. 확정되었다.

나. G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양도 등

- 1) G은 H, I블록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속창호공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 2) G은 2019. 10. 31. 및 같은 해 11. 1.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합계 215,053,500원 부분을 별지 목록 내용과 같이 각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들의 채권 가압류 및 압류·추심명령

- 1) 원고 A은 2019. 12. 9. G이 가지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200,000,000원의 범위에서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19카합271), 위 가압류결정은 2019. 12. 30. J에 송달되었다.

2) 원고 A은 2020. 3. 3. G이 가지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819,830,371원의 범위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20타채1911),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20. 3. 5. J에 송달되었다. J은 2020. 3. 19. 위 법원에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 사실이 기재된 제3채무자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3) 또한, 원고 B은 2020. 3. 18. G이 가지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497,537,019원의 범위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20타채2096),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20. 3. 23. J에 송달되었다. J은 2020. 3. 27. 위 법원에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 사실이 기재된 제3채무자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라. J의 혼합공탁

1) J은 2021. 7. 12. G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피고들의 채권양도, 원고들의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경합하고 진정한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사유로,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G을 피공탁자로 하여 232,367,449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광주지방법원 2021년 금 제4004호로 혼합공탁(변제공탁 및 집행공탁) 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현재 광주지방법원 K로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을 제6~12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부적법 각하)

피고 주식회사 F은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사해행위임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관련 법리

민법 제406조 제2항이 정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기간 준수 여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다10134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1123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원고 A 갑 제10호증, 을 제10~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은 2020. 4. 8. 및 2020. 4. 9. 무렵 G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1) 을 제기한 사실, 원고 A이 신청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광주지방법원 2020타채1911)에서 J은 2020. 3. 19.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 사실이 기재된 제3채무자 진술서(제3항 순번 3, 4, 7~9 기재 각 채권)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은 위 각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2020. 4. 초순 무렵 G의 무자력을 알게 되었으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서 J의 제3채무자 진술서가 제출된 2020. 3. 19. 무렵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 A은 2020. 3. 19. 무렵 채권자취소의 원인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바, 원고 A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1. 9. 2.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2) 원고 B 갑 제10호증, 을 제6~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B은 2020. 3. 9. G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들인 P과 Q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등 소송(광주지방법원 2020가단4053)을 제기한 사실, 원고 B이 신청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광주지방법원

2020타채2096)에서 J은 2020. 3. 27.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 사실이 기재된 제3채무자 진술서(제3항 순번 3, 4, 7~9 기재 각 채권)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B은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2020. 3. 9. 무렵 G의 무자력을 알게 되었으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서 J의 제3채무자 진술서가 제출된 2020. 3. 27. 무렵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 B은 2020. 3. 27. 무렵 채권자취소의 원인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바, 원고 B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1. 9. 2.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노재호

판사나상아

판사박건훈

별지

1) 2020. 4. 8. L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광주지방법원 2020가단6059), 2020. 4. 9. 주식회사 M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부산지방법원 2020가단5248), 2020. 4. 9. 주식회사 N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5556), 2020. 4. 9. O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5549).